

#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연결 모법인	①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	④ 전화번호	
	⑤ 소재지			
⑥ 신고 구분	1. 정기신고, 2. 기한 후 신고		⑦ 신고일	
⑧ 연결사업연도	. . . . . ~ . . . . .		⑨ 예납기간	. . . . . ~ . . . . .
⑩ 법인종류별 구분(연결집단)	중소기업	일반기업	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	1. 유, 2. 무
	30	73		
⑫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	1. 해당, 2. 미해당		⑬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	1. 해당, 2. 미해당
⑭ 연결법인 구분	연결집단 계		연결모법인	연결자법인
⑮ 법인종류별 구분(⑪번 "1.유" 해당 시)			중소, 일반	중소, 일반
⑯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	개별법인 계산방식		연결납세 계산방식	중소, 일반
⑰ 연결법인명			중소, 일반	
⑱ 사업자등록번호			개별, 연결	개별, 연결
⑲ 직전 사업연도 월수			개별, 연결	개별, 연결

##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

⑳ 수입금액							
직전 사업연도	직전 사업연도 법인세	㉑ 연결산출세액 (연결법인별 산출세액)					
		㉒ 공제감면세액					
		㉓ 가산세액					
		㉔ 확정세액(㉑-㉒+㉓)					
		㉕ 수시부과세액					
		㉖ 원천납부세액					
		㉗ 차감세액(㉔-㉕-㉖)					
법인세 기준	㉘ 중간예납세액 [㉗×(6÷직전사업연도월수)]						
	㉙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						
	㉚ 차감중간예납세액(㉘-㉙) (미납세액, 미납일수, 세율)		( , ,2,2/10,000)	( , ,2,2/10,000)	( , ,2,2/10,000)	( , ,2,2/10,000)	
	㉛ 가산세액						
㉜ 납부할 세액 계(㉚+㉛)							
자기 계산 기준	㉝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						
	㉞ 법인세율						
	㉟ 연결산출세액						
	㊱ 연결세율(㉟÷㉝)						
	㊲ 연결법인별 산출세액						
	㊳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						
	㊴ 조정 연결산출세액						
	㊵ 결손금 조정세액						
	㊶ 공제감면세액						
	㊷ 가산세액						
	㊸ 원천납부세액						
㊹ 중간예납세액(㊲-㊶+㊷-㊸)							
㊺ 납부할 세액 계(㊹)							
중간 예납 세액 합계	㊻ 납부할 세액 계(㊺+㊹)						
	㊼ 분납세액						
	㊽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						
㊾ 납부세액 계(㊻-㊼-㊽)							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※ 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 1. 재무상태표 2. 포괄손익계산서 3. 세무조정계산서 4. 그 밖의 참고서류 (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, 표준손익계산서, 세무조정계산서,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)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① 법인명란, ② 사업자등록번호란, ③ 대표자 성명란, ④ 전화번호란 및 ⑤ 소재지란: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2. ⑥ 신고 구분란: 해당란에 체크합니다.
3. ⑧ 연결사업연도란: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.
4. ⑨ 예납기간란: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.
5. ⑩ 법인종류별 구분(연결집단)란: “중소기업”과 “중견기업”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연결집단용)(별지 제76호의18 서식)상 적합 기업, “상호출자제한기업”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체크합니다.
  - “중소기업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체크해야 합니다.
6.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: ⑩ 법인종류별 구분(연결집단)란이 “2.일반”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2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“1.유”에 체크하고,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“2.무”에 체크합니다.
7. ⑫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란: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외합니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1. 해당”에 체크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“2. 미해당”에 체크합니다.
8. ⑬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란: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)에는 “1. 해당”에 체크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“2. 미해당”에 체크합니다.
  - 가.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를 초과할 것
  - 나.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,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및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50% 이상일 것
  - 다.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
9. ⑮ 법인종류별 구분(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에서 “1.유”에 체크한 경우)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22제2항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“중소” 또는 “일반”에 체크합니다(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에서 “2.무”에 체크한 법인은 적지 않습니다).
10. ⑯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(연결납세 계산방식)하는 경우 “연결”에 체크하고, 연결법인별로 「법인세법」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(개별법인 계산방식)하는 경우에는 “개별”에 체크합니다.
11. ⑰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: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.
12. ⑱ 수입금액란: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13.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
  - 가.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, 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.
  - 나. ⑲ 연결산출세액(연결법인별 산출세액)란: 직전 사업연도의 “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”의 ⑩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,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”의 ⑮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수정신고,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,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.
  - 다. ⑳ 공제감면세액란: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,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.
  - 라. ㉑ 수시부과세액란 및 ㉒ 원천납부세액란: 직전 사업연도에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수시부과된 세액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.
  - 마. ㉓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: 해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.
    - \*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(㉔)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.
  - 바. ㉕ 가산세액란: 기한 후 신고·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다음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    - \* 미납세액에 가산세율(2.2/10,000를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를 적용합니다)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  - 사. ㉖ 납부할 세액 계란: “개별법인 계산방식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“0”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“납부할 세액 계”를 계산합니다.
14.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
  - 가.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.
  - 나.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“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, 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.
  - 다. ㉗ 법인세율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“연결집단 계”의 “연결납세 계산방식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.
15. 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: ⑩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“개별”에 해당하는 법인은 ㉓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고, “연결”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.
  - 가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없는 경우: ㉓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㉖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
  - 나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: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. 다만,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.
16. ㉙ 납부할 세액 계란: “개별법인 계산방식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“0”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“납부할 세액 계”를 계산합니다.
17. ㉚ 납부할 세액 계란: “연결납세 계산방식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“0”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“납부할 세액 계”를 계산합니다.
18. 연결집단 분납세액(㉛ 분납세액)의 납부기한: ⑩ 법인종류별(연결집단)란의 “중소기업”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, “일반기업”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.
19. 음영(■)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